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배달 플랫폼 정의 및 수수료 규제 등〉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54호)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19호)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46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 목 차

|                                        |    |
|----------------------------------------|----|
| I. 이강일의원안(제2213454호) .....             | 1  |
| 1. 제안경위 .....                          | 1  |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 박정훈의원안(제2213519호) .....            | 4  |
| 1. 제안경위 .....                          | 4  |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4  |
| III. 김남근의원안(제2215046호) .....           | 6  |
| 1. 제안경위 .....                          | 6  |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6  |
| IV. 검토의견 .....                         | 10 |
| 1. 제정안 및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의의 .....          | 10 |
| 2. 배달플랫폼 등 정의규정(이강일·박정훈·김남근 의원안) ..... | 21 |

|                                                             |     |
|-------------------------------------------------------------|-----|
| 3.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 34  |
| 4. 수수료 상한제 또는 서비스 이용료 차별금지(이강일·박정훈·김남근 의원안) ·               | 38  |
| 5. 정보의 공개(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 53  |
| 6. 다양한 배달비 서비스 상품 제공의무 및 단체협상권 부여<br>(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 58  |
| 7.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이강일 의원안) .....                               | 64  |
| 8.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보복조치 금지(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 67  |
| 9. 배달종사자 권익 보호 및 평가제도 운영 시 준수사항 규정(이강일 의원안) ..              | 70  |
| 10. 소비자 보호(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 73  |
| 11. 분쟁조정(이강일 의원안) .....                                     | 77  |
| 12. 실효성 확보수단: 조사(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 81  |
| 13. 실효성 확보수단: 시정조치(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br>(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 87  |
| 14.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 93  |
| 15. 실효성 확보수단: 벌칙과 과태료(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 98  |
| 16. 기타: 준용 규정, 비밀엄수 의무 및 전속고발권(김남근 의원안) .....               | 102 |

# I. 이강일의원안(제2213454호)

##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2.

(3) 회 부 일 : 2025. 10. 10.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배달앱, 쿠팡, 카카오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 및 생활 물품의 거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의 높은 배달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불투명한 배달비 산정 구조로 인한 신뢰 훼손이나 배달종사자의 권익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산업에 대하여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 규율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배달비 부담 전가, 배달종사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중소 입점업체에 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 및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 및 배달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가입 지원, 휴식 보장 및 적정 배달 환경 조성 및 안전 조치 강화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배달플랫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 요구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등 제한 기준의 위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 II. 박정훈의원안(제2213519호)

###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훈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0. 10.

(3) 회 부 일 : 2025. 10. 1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의 매출액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

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나.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중개수수료·결  
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  
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담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  
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Ⅲ. 김남근의원안(제2215046호)

####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24인
- (2) 제 안 일 : 2025. 12. 9.
- (3) 회 부 일 : 2025. 12. 10.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과거 이용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용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효과는 없었으며, 그 사이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 도·소매 업종까지 배달사업을 확장하고 광고비를 인상하는 등 독과점 남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왔음.

이러한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확대를 위해 무료배달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여 수수료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구조, 독과점 정도, 이용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실제로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에 대응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성공적인 입법 경험 있음.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 음식배달종사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를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금지함(안 제5조).
- 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사업자 대상 배달비 분담 강제,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제공을 금지함(안 제6조).
- 라.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음식배달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 현황, 우대 수수료율 및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
- 마.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입점업체 현황, 소비자의 배달비 분담 내역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 예상 배달 소요시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 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이나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 IV. 검토의견

### 1. 제정안 및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의의

□ 모바일기기와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합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계기로 개인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O2O 서비스 이용은 음식과 생활 물품 등 필수재(essential goods)의 거래는 물론, 택시, 세차, 가사, 생활 관리 분야까지 확대되었음.

□ O2O 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배달플랫폼은 재화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주문과 배송 관리 및 홍보 등을 취급함.

- 배달플랫폼의 이용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 모델 중 하나인 음식배달의 경우 온라인(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주문한 음식배달의 거래액 규모는 2020년 약 17조 3,800억원에서 2024년 약 36조 9,9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식업체 중 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같은 기간 19.9%에서 2024년 31.7%로 증가하였음.

또한,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전문 조사기관인 와이즈앱·리테일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 52.7%인 2,701만명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고, 2,351만명이 배달앱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남.<sup>1)</sup>

□ 배달플랫폼 수요가 폭증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시장점유율 집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문제, 배달종사자(라이더)의 근로조건,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격 상승, 데이터의 독점,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됨.

- 즉, 배달플랫폼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여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교차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발생시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파생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우려가 지속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에 음식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율규제는 배달플랫폼 입점 계약의 관행 개선, 배달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 처리절차 개선, 배달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함.

---

1) 해당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2,238만명, 쿠팡이츠 1,101만명, 요기요 504만명, 뽕겨요 153만명임.

### <자율규제 방안(2023년 3월)>

| 구분                            | 주요 내용                                                                                                                                                                                                         |
|-------------------------------|---------------------------------------------------------------------------------------------------------------------------------------------------------------------------------------------------------------|
| 배달플랫폼<br>입점계약 관행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점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사항(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li> <li>-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li> </ul>                                                       |
| 배달플랫폼-소상공인<br>간 분쟁처리 절차<br>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li> </ul>                                                                                                                                  |
| 상생 및 소상공인<br>부담 완화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달의민족: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 연장</li> <li>- 요기요: 대금 정산주기 단축 및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 도입</li> <li>- 쿠팡이츠: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 연장,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무료화</li> </ul> |

□ 자율규제는 일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정책 체감에 한계가 있고,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아니한 가운데 배달종사자(라이더)의 근로환경 및 처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24년 7월에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출범함.

-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음.

### <상생협의체 구성>

-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 홍연금 물가본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참),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는 기본 중개수수료를 최대 5%로 인하하고, 입점업체의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여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2%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를 넘지 아니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을 2%로 적용하며,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원~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각 사업자가 자체적인 상생요금제를 출시하였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제시한 최종 상생요금제>**

|       | 현행                                                                                                                                                                              | 상생방안(or 자율시행안)                                                                                                                                                                                                                                                                                                                                                                                                                                                                                                                                                                                                                                                                                                                                                                                                                                                                                          |
|-------|---------------------------------------------------------------------------------------------------------------------------------------------------------------------------------|---------------------------------------------------------------------------------------------------------------------------------------------------------------------------------------------------------------------------------------------------------------------------------------------------------------------------------------------------------------------------------------------------------------------------------------------------------------------------------------------------------------------------------------------------------------------------------------------------------------------------------------------------------------------------------------------------------------------------------------------------------------------------------------------------------------------------------------------------------------------------------------------------------|
| 배달의민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민배달</li> <li>: 중개수수료 9.8% + 배달비 1,900원~2,900원</li> <li>○ 전통시장: 0%(일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민배달</li> <li>➤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li> <li>- 거래액 상위 0~35%: 7.8% + 배달비 2,400~3,400원</li> <li>- 거래액 중위 35~50%: 6.8% + 배달비 2,100~3,100원</li> <li>- 거래액 중위 50~80%: 6.8% + 배달비 1,900~2,900원</li> <li>- 거래액 하위 80~100%: 2.0% + 배달비 1,900~2,900원</li> <li>○ 전통시장: 0%(전국)</li> <li>○ 향후 3년간 시행</li> </ul>                                                                                                                                                                                                                                                                                                                                                                                                                                                                                                                                                           |
| 쿠팡이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팡배달</li> <li>: 중개수수료 9.8% + 배달비 1,900원~2,900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팡배달</li> <li>➤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li> <li>- 거래액 상위 0~35%: 7.8% + 배달비 2,400~3,400원</li> <li>- 거래액 중위 35~50%: 6.8% + 배달비 2,100~3,100원</li> <li>- 거래액 중위 50~80%: 6.8% + 배달비 1,900~2,900원</li> <li>- 거래액 하위 80~100%: 2.0% + 배달비 1,900~2,900원</li> <li>○ 향후 3년간 시행</li> </ul>                                                                                                                                                                                                                                                                                                                                                                                                                                                                                                                                                                                   |
| 요기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게배달</li> <li>: 중개수수료 12.5%</li> <li>○ 요기배달</li> <li>: 중개수수료 12.5% + 배달비 1,900원~2,900원</li> <li>○ 포장</li> <li>: 중개수수료 12.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게배달</li> <li>➤ 중개수수료 9.7%(2024년 9월 旣 시행)</li> <li>➤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구간 9.7% / 2구간 8.7% / 3구간 7.7% / 4구간 4.7%</li> <li>* 1~4구간 기준은 지역·입점업체별로 달리 적용</li> </ul> </li> <li>➤ 거래액 하위 40%: 중개수수료 20% 포인트페이백</li> <li>○ 요기배달</li> <li>➤ 중개수수료 9.7%('24.9월 旣 시행) + 배달비 1,900~2,900원</li> <li>➤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구간 9.7% / 2구간 8.7% / 3구간 7.7% / 4구간 4.7%</li> <li>* 1~4구간 기준은 지역·입점업체별로 달리 적용</li> </ul> </li> <li>➤ 거래액 하위 40%: 중개수수료 20% 포인트페이백</li> <li>○ 포장</li> <li>➤ 중개수수료 7.7%('24.9월 旣 시행)</li> <li>➤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구간 7.7% / 2구간 6.7% / 3구간 5.7% / 4구간 2.7%</li> </ul> </li> <li>➤ 거래액 하위 40%: 중개수수료 20% 포인트페이백</li> </ul> |

(자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결과(2024. 11.))

□ 이에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강제를 통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며, 소상공인과 배달종사자의 부담완화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됨.

- 특히 김남근 의원안의 경우 부칙 제2조2)에서 법률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있어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도모한다는 의의가 있음.

####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의 체계>

| 구분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주요 용어  | -배달,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 -음식배달플랫폼, 음식배달플랫폼서비스, 음식배달플랫폼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자,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 음식배달종사자, 음식배달플랫폼서비스 이용료 |
| 대상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중개거래금액, 일평균 이용자 수 이상   |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인 배달플랫폼사업자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총매출액 100억원 이상, 총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
| 수수료 규제 | -중개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상·하한제                   |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상한제            |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

2)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구분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표준<br>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의<br>표준계약서 마련<br>및 사용권고                                             | -      | -                                                                   |
| 배달비<br>규제        | -배달비 관련 다양한<br>상품 출시 의무, 단체<br>협상권 부여                                       | -      | -배달 방식, 배달비 분담 수준을<br>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br>의무, 특정 배달 방식 및<br>분담 강요 금지 |
| 정보<br>공개         | -배달비 산정 근거,<br>배달플랫폼 사업자<br>정보, 중개수수료·결<br>제수수료·광고비 등의<br>부과 기준 및 산정        | -      | -배달플랫폼 사업자 정보, 우대<br>수수료율 및 평균수수료율 등                                |
| 불공정<br>거래행위<br>등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br>손해배상 회피, 부당한<br>거래 강요, 낮은<br>배달비 지급 등                      | -      | -보복조치 금지                                                            |
| 배달<br>종사자        | -배달플랫폼 사업자<br>의 배달종사자 권익<br>보호 의무, 배달종<br>사자 평가제도 운<br>용 시 준수하여야<br>할 사항 규정 | -      | -                                                                   |
| 소비자<br>보호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br>공의무, 소비자 피해<br>보상(보상기준, 보험,<br>보증금)                         | -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 분쟁조정             | -분쟁조정위원회                                                                    | -      | -                                                                   |

□ 다만,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함.

- 먼저, 규제 형평성 측면으로서 배달플랫폼 또는 음식배달플랫폼만 별도 규제를 할 필요에 관한 사항임.

양면시장과 교차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음식)배달플랫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입점 사업자와의 수수료 갈등도 (음식)배달플랫폼 외 다양한 플랫폼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sup>3)</sup> 배달플랫폼만 별도의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임.

특히,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배달플랫폼 등에 대해서만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배달플랫폼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 등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준하여 보는 것이 법 형식이나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안)에 대하여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일반 경쟁법으로서 기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특정 업종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

3) 예를 들어 앱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30%)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함.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음으로, 일부 규제가 과잉금지의 원칙, 영업의 자유 및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일부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나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수수료 상한제, 단체 협상권 부여 및 정보공개 의무 등을 둔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이 플랫폼에 헌법상 의무를 넘어서는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며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통상마찰의 가능성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해 미국 측이 꾸준히 비관세장벽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온 만큼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에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수료 상한제 등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면서도 규제의 대상은 대기업 또는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쿠팡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미국 기업<sup>4)</sup>에 대해 개정안의 규제가 적용되므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4) 쿠팡 Inc.의 의장(김범석)이 현재 미국 국적이고, 쿠팡은 2021년 3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소(NASDAQ)에 상장되어 있음.

산업통상부도 플랫폼 규제는 미국 의회, 정부, 업계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동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이 통상분쟁의 소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먼저, 제정안에 대하여 배달플랫폼 내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제로 인한 풍선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달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를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입법의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며,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정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5)에 따른 공익의 범위인 ‘공정한 경쟁’ 및 ‘소비자의 이익’에

---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벌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벌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해당하므로 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타법개정을 통하여 「공익  
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제정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2. 배달플랫폼 등 정의규정(이강일·박정훈·김남근 의원안)

□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등을 정의함.

| 현행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제2조(정의)<br>(생략) | 제2조(정의) 이<br>법에서 사<br>용하는 용<br>어의 뜻은<br>다음과 같<br>다.                                                                             | 제2조(정의)<br>(현행과 같<br>음) | 제2조(정의) 이<br>법에서 사<br>용하는 용<br>어의 뜻은<br>다음과 같<br>다. |
| 1. (생략)         | 1. “배달”이<br>란 소비자<br>가 주문한<br>음식 또는<br>생활물품<br>(이하 “배<br>달상품”이<br>라 한다)을<br>근거리에서<br>즉시 또는<br>단시간 내<br>에 배송하<br>는 행위를<br>말한다. 이 | 1. (현행과<br>같음)          |                                                     |

| 현행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신설> | <p><u>경우 구체</u><br/><u>적인 범위</u><br/><u>와 유형은</u><br/><u>대통령령으</u><br/><u>로 정한다.</u></p> <p>2. “배달플랫폼”이란 배달 상품 의 주문, 결제 및 배달을 중개하거나 직접 수행 하는 거래 를 전자적 방 식 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p> | <p>1의2. “배달 플랫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식품 주문 및 배달 등 거래 를 중개하 는 플랫폼 을 말한다.</p> | <p>1.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외식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외식 상품 (이하 “외식 상품”이라 한다)을 둘 이상 이 용자 간에 근거리에서 거래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p> |

| 현 | 행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   |        |        | <p>2. “음식배달 플랫폼 서비스”란 음식배달플랫폼사업자가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가. 외식상품의 주문·결제·배달중개</p> <p>나. 외식상품의 주문·결제 중개</p> |

| 현행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p>&lt;신설&gt;</p> | <p>3. “배달플랫폼 사업자”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배달상품의 주문, 결제 및 배달을 중개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p> | <p>1의3. “배달플랫폼사업자”란 배달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p> | <p>및 배달의 직접 수행다. 외식상품의 주문·결제 중개(이 경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란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에 관한 계약</p> |

| 현행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 한다.                                                                     | 제2호의 대<br>기업에 해<br>당하는 자<br>를 말한다.                                      | (이하 “중<br>개 거래 계<br>약”이라 한<br>다)을 체결<br>하여 음식<br>배달플랫폼<br>서비스를<br>제공하는<br>것을 주된<br>사업으로<br>영위하는<br>자로서 대<br>통령령으로<br>정하는 기<br>준에 따른<br>사업자를<br>말한다. |
| <신설> | 4. “입점업<br>체”란 배달<br>플랫폼 사<br>업자를 통<br>하여 배달<br>상품을 제<br>공하는 사<br>업자를 말 | 1의4. “입점<br>업체”란 배<br>달플랫폼을<br>통하여 음<br>식·재화<br>또는 용역<br>을 소비자<br>에게 제공 | 4. “음식배달<br>플랫폼 이<br>용사업자”<br>(이하 “이<br>용사업자”<br>라 한다)란<br>음식배달플<br>랫폼 사업                                                                           |

| 현 | 행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   | <u>한다.</u>                                                                                | <u>하기 위하</u><br><u>여 등록된</u><br><u>사업자</u> 를<br><u>말한다.</u> | <u>자와의 중</u><br><u>개거래계약</u><br><u>을 체결하</u><br><u>여 음식배</u><br><u>달 플랫폼</u><br><u>서비스를</u><br><u>제공 받는</u><br><u>사업자</u> 를<br><u>말한다.</u> |
|   |   | 5. “배달종사<br>자”란 배달<br>플랫폼 사<br>업자 또는<br>입점업체의<br>요청에 따<br>라 배달상<br>품을 배송<br>하는 자를<br>말한다. |                                                             | 6. “음식배달<br>종사자”란<br>음식배달플<br>랫폼 사업<br>자의 요청<br>에 따라 외<br>식 상품을<br>배달하는<br>자를 말한<br>다.                                                     |
|   |   | 6. “소비자”<br>란 배달플랫<br>폼 사업자를<br>통하여 배달<br>상품을 주문<br>하는 자를                                 |                                                             | 5. “음식배달<br>플랫폼 소<br>비자”(이하<br>“소비자”라<br>한다)란 음<br>식배달플랫                                                                                   |

| 현 | 행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   | <u>말한다.</u> |        | <p><u>품을 이용</u><br/> <u>하여 이용</u><br/> <u>사업자로부</u><br/> <u>터 외식상</u><br/> <u>품을 구매</u><br/> <u>하는 자를</u><br/> <u>말한다.</u></p> <p>7. “음식배달비”<br/> (이하 “배<br/> 달비”라 한다)<br/> 란 음식배달<br/> 플랫폼 사<br/> 업자가 음<br/> 식배달종사<br/> 자에게 배달<br/> 업무의 대<br/> 가로 지급<br/> 하는 금액<br/> 을 말한다.</p> <p>8. “음식배달<br/> 플랫폼 서<br/> 비스 이용<br/> 료”(이하<br/> “서비스 이<br/> 용료”라 한</p> |

| 현             | 행 | 이강일의원안 | 박정훈의원안            | 김남근의원안                                                                                                                                                                                                                                                                                                                                                                                           |
|---------------|---|--------|-------------------|--------------------------------------------------------------------------------------------------------------------------------------------------------------------------------------------------------------------------------------------------------------------------------------------------------------------------------------------------------------------------------------------------|
| 2. ~ 20. (생략) |   |        |                   | <u>다)란 명칭</u><br><u>이나 형식과</u><br><u>상 관 없 이</u><br><u>이용사업자가</u><br><u>음식배달플랫폼</u><br><u>사업자로부터</u><br><u>제 공 받 는</u><br><u>음식배달플랫폼</u><br><u>서비스 및</u><br><u>이에 부수</u><br><u>하여 이루</u><br><u>어지는 광고</u><br><u>고객관리 등</u><br><u>각종 서비</u><br><u>스의 대가</u><br><u>로 음식배</u><br><u>달 플 랫 폼</u><br><u>사업자에게</u><br><u>지 급 하 는</u><br><u>금전으로서</u><br><u>대통령령으로</u><br><u>정하는 것</u><br><u>을 말한다.</u> |
|               |   |        | 2. ~ 20. (현행과 같음) |                                                                                                                                                                                                                                                                                                                                                                                                  |

□ 제정안의 주요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이강일 의원안은 ‘배달’을 소비자가 주문한 배달상품(음식 또는 생활 물품)을 근거리에서 즉시 또는 단시간 내에 배송하는 행위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김남근 의원안은 ‘배달’에 대한 정의는 두지 않음.
- 다음으로 이강일 의원안은 ‘배달플랫폼’을 배달상품의 주문, 결제 및 배달을 중개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배달플랫폼을 통해 배달상품의 주문, 결제 및 배달을 중개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자를 ‘배달플랫폼사업자’로 명명하며, 배달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입점업체’로 정의함.

김남근 의원안은 ‘음식배달플랫폼’을 외식상품을 이용자 간에 근거리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는 외식상품의 주문·결제·배달 중개, 배달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로 보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를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음식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와의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로 정의함.

- 또한, 이강일 의원안은 ‘배달종사자’를 배달플랫폼사업자 또는 입점업체의 요청에 따라 배달상품을 배송하는 자로, ‘소비자’를 배달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배달상품을 주문하는 자로 각각 정의함.

김남근 의원안은 ‘음식배달종사자’를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외식상품을 배달하는 자로,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를 음식배달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사업자로부터 외식상품을 구매하는 자로 각각 정의함.

□ 한편,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안)은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에 대해서만 정의규정을 둠.

- 먼저, ‘배달플랫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식품 주문 및 배달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말함.

- 다음으로, ‘배달플랫폼사업자’란 배달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말하고, ‘입점업체’는 배달플랫폼을 통하여 음식·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말함.

□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의 정의규정은 수수료 규제 등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이강일 의원안은 ‘배달’ 규정에서 배달상품의 대상으로 음식과 생활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해,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플랫폼’의

정의에 따라 식품으로만 한정하고, 김남근 의원안도 ‘음식배달 플랫폼’의 정의에서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외식상품<sup>6)</sup>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법률안의 규율대상이 달라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대상을 어느 범주까지 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박정훈 의원안과 김남근 의원안에 따른 경우 규제의 범주는 음식 배달플랫폼으로 축소되고,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따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일부 사업자로 규제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봄.

- 둘째, 이강일 의원안은 ‘근거리에서 즉시 또는 단시간 내에 배송하는 행위’를 배달로 보고, 김남근 의원안은 ‘근거리에서 거래’를 음식배달 플랫폼 정의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근거리’나 ‘단시간’과 같은 용어는 불확정개념으로 수범자가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즉, 제정안들은 배달앱이나 쿠팡이츠<sup>7)</sup>를 규율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정의에 해당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리’, ‘단시간’ 등의 해석 범위에 따라 배달앱, 쿠팡이츠 외 상당수의 플랫폼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강일 의원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달’의 구체적인 범위와

---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7) 쿠팡이츠란, 일반적으로 한 두 시간 이내의 신속배송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로서 배달의민족(B마트),마켓컬리(컬리나우), 네이버(지금배달), 이마트(쓱고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률에서는 예측이 어려운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 아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셋째, 이강일 의원안은 김남근 의원안과 달리, ‘배달플랫폼’에 중개 거래를 포함하지 아니한 배달상품의 주문, 결제 및 배달을 직접 수행하는 거래까지 규정하고 있고,

중개거래가 아닌 배달상품의 주문, 결제 및 배달을 직접 수행하는 자도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보는데, 해당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가 소비자에게 직접 음식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입법의 목적과 규제의 적용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sup>8)</sup>

- 넷째, 박정훈 의원안의 ‘입점업체’ 정의 중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sup>9)</sup>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박정훈 의원안이 이에 따른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률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임을 명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8) 다만, 이강일 의원안 제3조에서 배달플랫폼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따라 규모가 작은 업체는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음.

9)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강일 의원안에 대해 음식 외 생활물품의 배달까지 규율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김남근 의원안처럼 음식배달플랫폼으로 한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만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3.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달플랫폼 거래에 적용한다.</p> <p>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p> <p>2. 중개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p> |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적용한다.</p> <p>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각종 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p> <p>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외식상품의 총 판매금액이 1,00</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3. 일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자</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 <p>0억원 이상인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총 판매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p> <p>3.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월평균 국내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자</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

- ☐ 이강일 의원안과 김남근 의원안은 이 법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달플랫폼 거래에 적용하도록 하되, 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제의 대상으로 함.
- 이강일 의원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김남근 의원안은 법률에서 총 매출액 100억원, 총 판매금액 1천억원,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명이라는 하한을 두고 대통령령에 위임함.

□ 제정안들은 법률안이 배달플랫폼 거래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규제의 대상을 비교적 그 규모가 큰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 규제를 도모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다만, 이강일 의원안 제3조제2항은 법 적용 대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규모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즉, 안 제3조제2항은 법 적용대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를 제1호부터 제3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에서 매출액, 중개 거래 금액, 일평균 이용자 수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는 수범 대상자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sup>10)</sup>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이 불가피하다면 법률에서는 그 하한을 두는 등 대강을 정하고 그 범위

10) 제정안과 같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규모의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3항, 제32조의10제2항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례로 보기 어려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봄.

□ 김남근 의원안의 경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하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봄.<sup>11)</sup>

- 김남근 의원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뽕겨요 4개 사업자가 법 적용대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포섭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부개정령의 형식을 취하는 박정훈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규제가 국내·외로 매우 폭 넓게 적용됨.

□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수수료 규제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 간, 외국 기업 간 차별의 가능성 등 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11) 아울러 김남근 의원안 제3조제2항제2호 본문은 오타가 발견되는 바 입법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함.

#### 4. 수수료 상한제 또는 서비스 이용료 차별금지(이강일·박정훈· 김남근 의원안)

□ 이강일·박정훈 의원안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상한을 거래금액의 15% 범위에서 정하고,

이 중 이강일 의원안은 예외적으로 영세·중소의 입점업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매출규모별·지역별로 상한 비율의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김남근 의원안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부당한 서비스 이용료 차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 또한, 이강일 의원안은 새로운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수료 상한제를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상한과 하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달비의 상·하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리, 시간대, 지역, 기상 여건, 배달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김남근 의원안도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

에게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회피하거나 그 부담을 전가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명령권 및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 요청권을 부여함.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5조(중개수수료 등의 상한)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한 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거래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의 입점업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매출규모별·지역별로 상한 비율의 차등을 둘 수 있다.</p> | <p>제5조(서비스 이용료 차별금지 등) 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서비스 이용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이하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정거</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③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제1항의 상한제를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배달비의 상·하한)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에게 배달업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배달비”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 시간대, 지역, 기상 여건, 배달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배달비의 상한과 하한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배달비 상·하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p> | <p>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이하 “우대 서비스 이용료”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p> <p>④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명목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당하게 증액하는 등으로 제3항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 의무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비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으로 제3항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하는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 의무 회피행위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부담 전가 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산정 및 제4항·제5항에 따른 금지의무</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달종사자의 적정 수입 보장과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p>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배달비의 산정 기준 및 부과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⑧ 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우대 수수료를 산정 및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매출액 정보 등 필요한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

-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배달비
- 중개수수료 · 결제수수료 · 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행위, 수수료 또는 광고비를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그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현행                                                                                                                                                                                                   | 박정훈 의원안                                                                                                                                                                                                                                                                                                                                                                                                                                                                            |
|------------------------------------------------------------------------------------------------------------------------------------------------------------------------------------------------------|------------------------------------------------------------------------------------------------------------------------------------------------------------------------------------------------------------------------------------------------------------------------------------------------------------------------------------------------------------------------------------------------------------------------------------------------------------------------------------|
| <p>제5조(<u>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u>)</p> <p>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u>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② <u>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p>제5조(<u>시장지배적지위 등의 남용금지</u>)</p> <p>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u>배달플랫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1. <u>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u></p> <p>· <u>중개수수료 · 결제수수료 · 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행위</u></p> <p>2. <u>수수료 또는 광고비를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u></p> <p>3. <u>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행위</u></p> <p>③ <u>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각 법률들은 수수료 규제를 도입하여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예방하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 간 합의를 유도하여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이 사실상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규제를 도입하여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높게 결정하거나, 무료배달 홍보와 같이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광고상품의 출시에 따른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또한, 이강일·김남근 의원안처럼 업종별·매출규모별·지역별로 수수료 상한을 차등하는 방식은 제도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어 법 적용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도 있음.

□ 아울러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한 규제 적용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강일·김남근 의원안에서는 새로운 수수료의 도입이나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박정훈 의원안도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수료 전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받는 중개보수의 상한을 둔 사례(「공인중개사법」),<sup>12)</sup>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과 징수 대상자 간 수수료의 상한을 둔 사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sup>13)</sup> 최저임금 사례(「최저임금법」),<sup>14)</sup>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sup>15)</sup>와 같이 법률에서 수수료나 가격의

12)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중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13)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 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4)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5)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상한(하한)을 두는 입법례도 있으므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 일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정안들과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하는 수수료 규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법률에 따른 수수료 상한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강일 의원안은 제5조제1항에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총액을 거래금액의 15% 이하로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로서 업종별, 매출규모별, 지역별로 상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차등하여 둘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수수료 상한의 한도를 법률이 아닌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박정훈 의원안은 수수료 상한을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수수료의 범위를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으로 정하고 있어 열거한 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도 수수료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김남근 의원안 역시 우대 수수료율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

---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안과 유사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sup>16)</sup>

(음식)배달플랫폼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수수료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 상한의 범위와 요건을 법률에서 최대한 예측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수료 규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가격 개입으로서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단체(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고,

배달플랫폼의 사업영역이 생활 필수적 영역이나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 전체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가격 개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함.

특히 국가가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시정조치(시정 명령), 과징금과 같은 행정상 제재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

---

16) 다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법」에서도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임.

다는 입장임.

또한, 이강일 의원안처럼 배달비의 상한과 하한을 두어 규제할 경우 음식배달업 종사자와 규제 대상이 아닌 그 밖의 배달종사자 (예: 퀵서비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배달종사자의 업종 이전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가능성도 제기함.

나아가 이강일·박정훈·김남근 의원안처럼 광고비를 포함하여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규제는 세계에서조차 찾기 어려운 과잉규제이고, 이강일·박정훈 의원안이 규정하는 15%라는 수치에 대한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를 입법모델로 삼고 있는 김남근 의원안에 대해서는 결제 중개 외에 여신금융을 통한 이자수익이 주요 수입원인 카드사와 중개 및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음식플랫폼의 차이를 도외시한 측면, 신용카드업은 법률에 따라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산업인 반면, 플랫폼은 그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아울러 광고서비스는 중개서비스와 구분되는 별도의 마케팅 수단임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수수료(이용료) 규제에 포함하는 것은 국내외 사례가 없고, 경영상 판단 사항을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모델의 등장이나 사업 효율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혁신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셋째, 일부 법률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가격 규제와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규제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임.

즉, 배달플랫폼 서비스는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서비스가 아니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국가의 설권행위를 통한 강화상 특허(허가, 자격, 면허)를 부여받은 사업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수수료 또는 가격 규제의 입법례를 근거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봄.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고,<sup>17)</sup> 한정된 국가 자원인 전파에 대하여 주파수 할당 대가를 지불한 후 독점적 사용권을 얻으므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되고, 이를 위해 법 제28조<sup>18)</sup>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1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익성 심사, 주식 소유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법에서 규정함.

18)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인 포함)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법률에서 설권행위를 하고 있어 중개보수 상한제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반해,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나 공인중개사의 지위에 준하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법률에서 유사한 형태의 가격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박정훈 의원안은 수수료 상한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한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뿐 아니라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데, 다소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강일 의원안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이 적용될 수 있고,

김남근 의원안도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우대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과징금,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마지막으로 풍선효과의 발생 가능성임.

일부 연구<sup>19)</sup>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계기로 2020년 배달수수료 상한제(15%)를 도입한 미국 도시들<sup>20)</sup>의 경우 규제 대상인 독립레스토랑(independant restaurants)의 매출액은 크게 줄어든 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체인 레스토랑(chain restaurants)의 매출은 증가하였고, 평균 배달비용과 시간이 증가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포틀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수수료 규제를 폐지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sup>21)</sup>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배달플랫폼이 규제 대상 레스토랑을 후순위로 홍보하여 주문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상한제 자체로 발생한 효과라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배달플랫폼의 이러한 행위 역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수수료 규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9) Li, Zhuoxin, and Gang Wang. 2025. "Regulating Powerful Platforms: Evidence from Commission Fee Cap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36 (1): 126-140.  
<https://doi.org/10.1287/isre.2022.0191>

20)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DC, 저지시티, 산타모니카,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뉴저지 주 전체, 포틀랜드, 산레안드로, 버클리, 프레몽트, 오�클랜드 14개 지역

21) 단, 각 법률안은 풍선효과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명목의 수수료 부과행위나 소비자 전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국세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율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업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반면, 김남근 의원안에 대해서는 음식점의 배달플랫폼 거래의존도가 올라가는 추세로서 영세·중소 음식점의 플랫폼 이용 비용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배달플랫폼 영역은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어 특정 서비스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수수료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입점업체나 배달종사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법률안들의 규제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나목, 마목 및 사목<sup>22)</sup>과 중복 소지도

---

22)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있다는 입장임.<sup>23)</sup>

-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 산정 및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매출액 정보 등 필요한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김남근 의원안 제5조제9항에 대하여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제1항<sup>24)</sup>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함에도 제정안이 ‘매출액 정보 등 필요한 과세 정보’라는 다소 모호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정 시 ‘매출액 정보’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기하는 규제의 중복 우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24)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5. 정보의 공개(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제정안들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비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 정보, 각종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산정 방식 등을 배달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7조(배달비 산정 근거의 공개)</p> <p>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비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공개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의 부담액</li> <li>2. 입점업체의 부담액</li> <li>3.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취득한 금액</li> <li>4.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된 금액</li> <li>5. 배달비 산정에 적용된 거리, 시간대, 기상 여건 등의 요소</li> </ol>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달비 공개 방식을 표준화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정보 공개 의무)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배달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 <p>제7조(정보 공개 의무) 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배달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li> <li>2.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부과 기준 및 산정 방식</li> <li>3. 배달비 산정 기준 및 방식</li> <li>4. 소비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li> <li>2. 제5조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및 모든 이용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직전 연도 평균 수수료율</li> <li>3. 이용사업자,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li> </ol> |

□ 이강일 의원안 제7조에서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비의 산정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의 대상에는 소비자·입점업체의 부담액,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취득한 금액,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된 금액, 배달비 산정에 적용된 거리·시간대·기상 여건 등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또한, 이강일 의원안 제10조에서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정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부과 기준과 산정 방식, 배달비의 산정 기준 및 방식 등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김남근 의원안은 배달비 산정 근거에 대한 공개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정보와 함께 우대수수료율을 포함한 모든 이용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직전연도 평균 수수료율 등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제정안들이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여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이용사업자) 간 수요독(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임.

- 배달플랫폼-입점업체의 관계는 소수의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와 거래하는 구조이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가격결정자의 지위를 갖는데, 수수료 및 배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입점업체의 선택권 제한과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배달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

- 일부 연구<sup>25)</sup>에 따르면 투명성 의무의 부과는 수범자에 대한 침익적 효과가 가장 낮은 사전규제이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의 공개의무를 지우는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특히, 김남근 의원안은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우대 수수료율과 모든 이용사업자에 대한 직전 연도 평균 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우대 수수료율은 안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제정안은 음식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사업자 개별 또는 그룹별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의 노출 우려를 줄인 긍정적 측면도 있음.

□ 다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제정안들의 정보 공개 의무가 과도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먼저, 이강일 의원안 제7조제2항 각 호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배달비, 수수료, 광고비의 산정 요소에 해당하여 기업의 개별 원가구조와 수익배분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고, 기업의 조달 가격, 공정효율화 등이 포함되는 영업비밀이라는 의견임.

또한, ‘부과기준’, ‘산정방식’ 등 용어가 모호하여 알고리즘 등 사업자의 핵심 영업비밀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25)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김병욱·민형배, 2020. 12. p. 21

- 김남근 의원안의 경우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결정되는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것은 개별 음식플랫폼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정안들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형식적 측면에서 이강일 의원안 제7조와 제10조는 공개의 대상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투명성 의무 부여를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적고, 제7조와 제10조제1항제3호는 중복 소지도 있으므로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것이 입법효율적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봄.
- 다음으로 이강일 의원안 제10조제1항제5호와 김남근 의원안 제10조제1항제4호는 공개 대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공개 대상을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태료의 대상이 되므로 법률에서 공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정안에 대하여 배달플랫폼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 제공의무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영업 기밀의 포함 여부 및 다른 플랫폼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정보 제공의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서는 김남근 의원안을 지지함.

## 6. 다양한 배달비 서비스 상품 제공의무 및 단체협상권 부여(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제정안은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배달비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강일·김남근 의원안),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라 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김남근 의원안),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입점업체 단체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이강일 의원안)임.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8조(배달비 부담 구조) ①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배달비 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성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서비스 상품 선택권을 박탈하거나 배달비의 부담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입점업체 단체는 배달비 산정 및 부담 구조에 관하여 단체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p> | <p>제6조(배달비 분담 수준 등) 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p> <p>②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특정 배달 방식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배달비 분담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라 부당하게 해당 사업자를</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④ 제3항에 따른 단체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 단체 협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차별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달 방식 강요 및 이용사업자 차별·불이익 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먼저, 제정안들이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서비스 상품 선택권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의 배달비 부담 수준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은 최근 일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출시한 상품에 대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은 자사의 배달라이더를 입점업체에게 보내주고, 해당 배달라이더를 통해서만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민배달’ 상품을 출시하면서 그 배달비는 모두 입점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입점업체가 배달라이더를 선택할 수 있는 ‘가게배달’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배달앱에서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입점업체의 배달 선택권을

제한하며,

나아가 구독형 상품인 ‘배민클럽’을 출시하여 월 고정금액으로 구독한 소비자에게는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되, 실제 배달에 소요된 비용은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음.<sup>26)</sup>

□ 제정안은 입점업체의 서비스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배달비 부담을 강요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시장의 거래관계에서 부당하게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다만, 이강일 의원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소 선언적인 데 반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 및 양벌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반면, 김남근 의원안은 제6조제1항이 선언적인 수준인 만큼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김남근 의원안에 대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음식배달플랫폼사업자가 아닌 이용사업자가 배달방식과 배달비

---

26) 배달의민족의 구독형 상품 출시는 배달시장에서 쿠팡이츠가 쿠팡의 구독료인 와우멤버십을 바탕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임

분담수준을 설정하고, 이용사업자에게는 배달비 분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배달비용이 전가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sup>27)</sup>

아울러 제정안대로 하면, 배달플랫폼의 배달비 지원이나 프로모션이 사라지게 되므로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임.

□ 한편, 이강일 의원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은 입점업체가 단체를 구성하여 배달비의 산정 및 부담 구조에 관하여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입점업체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여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조건을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sup>28)</sup>

27) 협회는 과거에는 총 배달비용 중 6,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사업자가 그 분담비율을 설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용사업자가 배달비용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이 이용사업자의 매출구간에 따라 1,900원~3,400원의 배달비용을 분담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와 배달플랫폼이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사례로 제시함.

28)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 다만,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공유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및 통제를 통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sup>29)</sup>이라는 점에서 가맹사업 분야에서 인정하는 단체협상권을 배달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제정안은 입점업체가 구성한 모든 단체에 대하여 협상권을 부여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다수의 단체가 협상을 요청할 경우 협상의 효율 저하 및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sup>30)</sup>
- 나아가 제정안이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로 구성된 단체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30) 이에 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처럼 복수의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수의 입점업체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문제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음.

보다 강한 규제로서 법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31)</sup>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입점업체의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 상품 선택권을 박탈하거나 배달비 부담 강요 등을 금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므로 이강일 의원안 제8조제1항과 제2항 및 김남근 의원안 제6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임.
- 그러나 단체협상권을 규정한 이강일 의원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에 대하여는 음식점별로 규모와 업종 등이 상이하여 일부 단체에게만 유리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함.

## 7.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이강일 의원안)

- 이강일 의원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와 배달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달플랫폼 산업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도모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제9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거래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점업체와 배달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수료율, 광고비, 배달비와 그 산정 근거
2. 계약 해지의 사유 및 절차
3. 분쟁의 해결 방법 및 절차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sup>32)</sup>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sup>33)</sup>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sup>34)</sup> 등 개별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산업에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위 입법례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부담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줄이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제9조제1항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이 경우 입법례,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32)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3)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34)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 관련 표준계약서의 마련은 계약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플랫폼과 배달 종사자와의 표준계약서는 이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sup>35)</sup>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하여 권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35) 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8.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보복조치 금지(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이강일 의원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이를 금지하고, 김남근 의원안은 음식플랫폼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이용사업자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이용사업자에게 음식플랫폼사업자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11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점업체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li> <li>2. 입점업체에게 자기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li> <li>3. 입점업체에게 광고 등의 거래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li> <li>4. 배달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배달비를 지급하는 행위</li> <li>5. 소비자에게 배달비 등의 내역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li> <li>6. 그 밖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i> </ol> | <p>제9조(보복조치의 금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이나 해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의 정지·제한,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li> <li>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li> </ol>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 이강일 의원안 제11조제1항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배달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배달비를 지급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배달비 등의 내역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김남근 의원안 제9조는 음식배달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해당 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이나 해지, 서비스의 정지·제한 및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 볼 수 있음.

- 다만, 이강일 의원안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 법률로 규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제정안 제11조제1항제1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중 ‘거래조건차별’ 행위에 해당되고, 같은 항 제3호는 ‘거래강제’나 ‘구입강제’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5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중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규제가 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강일 의원안에 대하여 입점업체 외 배달종사자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제정안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함.

□ 아울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제정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부당하게 낮은 배달비’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봄.

## 9. 배달종사자 권익 보호 및 평가제도 운영 시 준수사항 규정 (이강일 의원안)

□ 이강일 의원안은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 제 정 안

제12조(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2.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 및 적정 배달 환경 조성
3. 기상특보 발령 시 배달 서비스 제한 또는 안전 조치 강화
4. 그 밖에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1항에 따른 안전 사항의 준수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배달종사자 평가제도 운영)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 기준 및 방법의 공개
2.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3. 부당한 평가로 인한 불이익 방지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강일 의원안 제12조는 우선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로서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육, 사고 보험 가입 지원, 휴식 보장, 기상특보 발령 시 배달 서비스 제한 및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면서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 사항의 준수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또한, 제13조에서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평가 기준과 방법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부당한 평가로 인한 불이익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제정안은 배달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평가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증진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다만, 제12조와 제13조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로서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제12조제1항 각호 및 제13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의 논란을 피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제정안 제12조제1항제2호의 ‘적정 배달 환경’이나 제13조 제1항제3호의 ‘부당한 평가’의 경우 불확정개념으로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의 조문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종사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은 제정법에 두지 말고 다른 법률에 두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고,

최근 소화물배송서비스 인증사업자(예: 배달플랫폼)에게 배달기사의 유상운송보험가입과 안전교육 이수 확인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입법의 실익이 적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배달종사자 권익 보호는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닌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임.

- 예컨대, 제정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달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배달종사자를 보호할 수는 있으나, 입점업체나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배달 환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임.

- 또한, 배달종사자는 배달플랫폼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독립적 계약 당사자인데, 배달플랫폼이 우수 배달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까지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임.

## 10. 소비자 보호(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제정안은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피해 보상 기준 및 절차 마련과 함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14조(소비자 정보제공) ①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점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li> <li>2.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할인 내용, 배달비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li> <li>3. 예상 배달 소요시간 및 배달 현황</li> <li>4.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li> <li>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p>제8조(소비자 정보제공) 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점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li> <li>2.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할인 내용,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 내역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li> <li>3. 예상 배달 소요시간</li> <li>4.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li> <li>5.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li> <li>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5조(소비자 피해보상)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예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

□ 이강일 의원안 제14조제1항과 김남근 의원안 제8조제1항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상호명, 대표자 성명 등을 포함한 사업자 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 예상 배달 소요 시간 및 배달 현황,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 또한, 이강일 의원안 제15조에서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예치 의무를 부여함.

□ 제정안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사전적 측면에서는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통한 소비자 불만과 분쟁 예방이라는 효과를, 사후적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 다만, 이강일 의원안 제15조제2항은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과 보증금 예치 의무만 두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밖의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sup>36)</sup>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예치 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또한, 김남근 의원안은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입점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4호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정의하고 있고, 다른 조문에서도 모두 이용사업자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

36)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의 일부 신중한 입장이 있음.

-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강일 의원안 제15조제1항에 대하여 이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sup>37)</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sup>38)</sup>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임.

- 다음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이강일 의원안 제14조와 김남근 의원안 제8조에서 입점업체 정보 등 입점업체가 스스로 제공하여야 할 사항까지 배달플랫폼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강일 의원안 제15조에 따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과 귀책 주체가 다양한데도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

37) 제33조(서비스약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8)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11. 분쟁조정(이강일 의원안)

- 제정안은 배달앱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 ① 배달앱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5. 배달종사자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6. 입점업체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 이강일 의원안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소속 기관이 당사자와 자문·고문 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소속 기관이 해당 사건에 관해 대리·증언·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

### 이강일 의원안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3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제정안은 배달앱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위원 9명의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둔.

-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배달 플랫폼 거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함(30일 연장 가능).

□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분쟁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소하므로 효율적으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제정안 제16조제2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하면서 소비자단체·배달종사자 관련 단체·입점업체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하여 분쟁 절차의 객관성 및 형평성 측면의 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배달플랫폼 관련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실익은 없다는 의견임.

## 12. 실효성 확보수단: 조사(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제정안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25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 업체, 배달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창고, 서버 등을 방문하여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 <p>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 <p>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 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li> <li>2.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li> <li>3.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한 경우</li> </ol> |

□ 이강일 의원안은 제25조제1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범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사무소, 서버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제2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김남근 의원안은 제10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범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신고 접수 사실을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강일 의원안과 김남근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강일 의원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개시에 관한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자료의 제출권과 위반행위 조사는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범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볼 수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임.

□ 다만, 이강일 의원안 제25조의 자료제출 요구(제1항)와 조사(제2항)의 요건, 김남근 의원안 제10조의 신고 또는 직권조사 규정과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및 제2항<sup>39)</sup>의 요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서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비판의 의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들의 조사에 관한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sup>40)</sup> 및 제81조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1월 미국 비영리기관인 NBR(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sup>41)</sup>이 발간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집행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정성적 증거 및 분석’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의 기준이 매우 낮고 임의적이며, 명확한 위법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일 익명 신고만으로도 조사 개시가 가능

39)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0)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41) 1989년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시애틀과 워싱턴 D.C.에 소재함.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특성을 갖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중심적이거나 기업에게만 친화적이라는 비판도 있음.

하다는 비판과 함께 경쟁제한성과 무관한 사소한 경영상 결정(예: 수익성이 낮은 거래나 관계를 종료하는 행위)과 같은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sup>42)</sup>

- 이러한 비판적 의견과 더불어 이강일 의원안은 제25조제1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김남근 의원안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7조제2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요건과 절차는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나아가, 이강일 의원안 제25조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서, 만약 해당 조항이 시장의 실태 파악, 정책 방향의 설계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sup>43)</sup>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

42) Nigel Cory, "Understanding the Impact of KFTC Enforcement on U.S. Firms: Qualitative Evidence and Analysis," report (Seattl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ovember 2025), pp. 2-10

43)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김남근 의원안은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과 그 절차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합리성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0조제1항에서 신고 접수사실을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하고 안 제4항에서 통지한 때부터 민법상 최고 절차<sup>44)</sup>가 진행되게 함으로써 음식플랫폼 사업자는 통지를 통해 분쟁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장기간 진행되어 민법상 소멸시효가 도과함으로써 민사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sup>45)</sup>

---

44)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함.

### 13. 실효성 확보수단: 시정조치(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 (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제정안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시정명령)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벌칙의 부과 근거를 두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제2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br>1. 위반행위의 중지<br>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br>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br>4.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br>5. 재발 방지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br>6. 수수료율 등 서비스 이용료 및 배달비의 조정 명령<br>7. 정보 공개 및 제공 의무에 따라 공개·제공된 정보의 정정 또는 보완<br>8.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p> | <p>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26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p> | <p>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이강일 의원안은 제24조에서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7조에서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

□ 김남근 의원안은 제12조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중지,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원상회복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제3항(우대 서비스 이용료)을 따르지 아니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0.3%의 범위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이 두려는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과 같은 실효성 확보수단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법령·처분·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제재조치로서 법 위반을 억제하고, 법 집행의 이행력을 담보하여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법률이 준수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들의 시정조치와 시정명령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시정조치(시정명령)에 따른 법적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만약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하려면 이강일 의원안 제8조제1항<sup>46)</sup> 등 법정 의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다툼의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음.

---

46) 제8조(배달비 부담 구조)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배달비 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성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 14.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제정안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두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등의 상한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li> <li>2. 제6조를 위반하여 배달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자</li> <li>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제1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를 위반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 <p>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p> |

□ 이강일 의원안은 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상·하한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김남근 의원안은 우대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한 음식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이용사업자에게 특정 배달 방식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배달비 부담을 강제하는 행위, 이용사업자의 배달비 부담 수준에 따라 부당하게 해당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제9조에 따른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가 끝날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제정안은 (음식)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용사업자)와 배달종사자의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을 경감하고 거래관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과징금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형평성 측면임.

이강일 의원안 제28조제1항제3호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20억원 이하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김남근 의원안 제14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후자의 경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5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sup>47)</sup>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반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제정안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독점규제 및 공정

---

47)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일부 중복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산정방식 및 상한금액을 차등하여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김남근 의원안 제14조의 과징금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에 비해 과도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배달시장을 특별하게 불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예측가능성에 관한 사항임.

김남근 의원안 제14조제1항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법정 한도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법률에서 대강의 부과 기준과 그 한도를 규정하여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소지가 없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15. 실효성 확보수단: 벌칙과 과태료(이강일·김남근 의원안)

□ 제정안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이강일 의원안), 벌칙(김남근 의원안)의 부과 근거를 두려는 것임.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를 위반하여 배달비 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자</li> <li>2. 제9조를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li> <li>3.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li> <li>4. 제12조를 위반하여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li> <li>5.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li> <li>6. 제15조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li> <li>7.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li> </ol> | <p>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li> <li>2.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li> </ol>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p>8.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 <p>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p> <p>3.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p> |

| 이강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                                                                                                      |
|---------|--------------------------------------------------------------------------------------------------------------|
|         |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이강일 의원안은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배달비 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김남근 의원안은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아니한 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sup>48)</sup>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48)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sup>49)</sup>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제18조에서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의 과태료와 벌칙의 부과 수준은 입법 재량의 영역임.

- 다만, 이강일 의원안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 사항임에도 과태료의 부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 김남근 의원안은 벌칙 수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 제17조 제1항은 제1호만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제1호를 삭제하고 이를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것이 법 기술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49)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 16. 기타: 준용 규정, 비밀엄수 의무 및 전속고발권(김남근 의원안)

□ 김남근 의원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조사 절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 제기 및 불복의 소에 관한 전속관할 등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과 비밀엄수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을 규정함.

| 김남근 의원안                                                                                                                                                                                                                                                                                                                                                                                                                                                                                                                                                                                                                                                                                                            |
|--------------------------------------------------------------------------------------------------------------------------------------------------------------------------------------------------------------------------------------------------------------------------------------------------------------------------------------------------------------------------------------------------------------------------------------------------------------------------------------------------------------------------------------------------------------------------------------------------------------------------------------------------------------------------------------------------------------------|
| <p>제1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2조의 “제80조”는 “이 법 제10조”로 본다.</p> <p>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의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는 “이 법 제12조”로 본다.</p> <p>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9조(고발 등)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

□ 제정안이 두려는 해당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09 |